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조서

제 3 회

사건 2006고단 24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사 조귀장 기일 : 2006. 9. 21. 14:00
장소 : 제522호 법정
법원 주사보 임석출 공개 여부 : 공개
고지된 다음 기일 : 2006. 10. 19. 17:00
피고인 김명호 출석
검사 차순길 출석

판사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피고인

별지와 같이 2006. 8. 22.자 공판조서 이의신청서 진술

판사

피고인의 변론 녹취신청에 대하여 향후 피고인신문이나 증인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청에 따른 녹취를 할 것을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의의 내용 및 취지를 밝힐 것을 명.

피고인

'형사소송규칙 132조에 의하면 증거신청의 방식은 검사가 먼저 증거신청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따라 그 다음에 피고인이 하게 되어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132조의 2는 검사가 할 때는 반드시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하면서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원 실무제령 제5장 공판절차에 의하면 증거를 제출할 것에 대하여 명백히 함과 동시에 그 각 서류의 입증취지를 설명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절차에 따라 검사가 증거신청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라고 답변

판사

(검사에게)개별 증거방법에 대한 입증취지를 밝힐 것을 명.

검사

(증거서류 등 목록을 제출하면서)목록에 어떤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지와 그 입증취지를

위 등본입니다
2006. 10. 19.
법원판사 임석출

기재하여 제출한다고 답변

(이때 검사가 피고인에게 증거서류 등 목록을 주고, 증거서류를 제시)

판 사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물은 즉,

피고인

이런 증거목록이 아니라 증거서류 자체에다 첨부하여 입증취지를, 이 증거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설명해 달라, 검사 측에서 허위 사실과 범의에 대한 입증취지에 걸맞는 증거를 제출했을 때에 한해서 의견을 내겠다고 진술

판 사

피고인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므로, 우선 피고인의 일부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채택한다고 고지

피고인

검사 측에서 각 증거에 대한 입증취지를 정확하게 쓴 것을 제시하면 1주일 내에 의견을 내겠다고 전술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판 사

변론 속행

2006. 9. 21.

법원 주사보

임석출



판 사

조 귀 장



공판조서 이의 신청서

사건 2006 고단 2459 명예훼손(서울지법 단독 8부, 조귀장 판사)

피고 김명중 서울시 도봉구 노동자회관
(휴대)

위 명예훼손 사건 관련, 8월 17일자 공판조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54 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② 차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의 및 변경 신청합니다.

첫째: 8월 17일자 공판에서는 전회(7월 4일자)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고지한 바 없습니다.

둘째: 8월 17일자 공판조서와 실제 공판 심리와의 차이

<실제 공판 심리내용>

판사: "증거목록(증거 서류등) '인, 부' 표 작성했나요?"

피고: "판사님 말대로 열람신청하려 재판부에 가보니 증거목록만 있고 증거들이 없어서 '인, 부' 결정을 할 수 없기에, 7월 12일 준비서면에서 설명하였듯이, 검사측에 증거 제출명령 내려달라고 했는데..."

검사측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으니, 허위사실에 대한 증거와 그 설명, 그리고 제가 범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와 그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월 보고 '인, 부' 결정을 하라는 겁니까?"

검사:(인부표를 보여주면서) "'인, 부' 표를 작성해야 자료가 재판부에 가는 것이고, 그 자료는 공안 사무국에 있습니다."

피고:"내가 왜 공안 사무국에 가야 하나요? 상식적으로 재판부에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근거가 되는 법이 뭡니까?"

판사:"여기는 형사소송법 강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피고:(상식에 어긋나는 검사와 판사의 말에...)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판사:"변론 중에 녹음할 수 없습니다."

피고:"그럼 다음에 신청하겠습니다."

판사:"소송절차에 관하여..., 변호사 선임할 생각 없습니까?"

피고:(딱 잘라)"없습니다."

판사:"증거를 받아보기 위한 절차로서, 먼저 '인, 부'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니 열람하고 작성하세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를 받아본 다음에 따지는 겁니다."

피고:(상식에 어긋나는 판사의 말에 어이가 없었고, 검사도 옆에서 판사를 거들고...) "그렇다면 제가 (형사소송법 등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판사:"양승태 증인신청은 현재 진행되는 것도 없어, 피해자를 증인신청하는 것은 부결하겠습니다."

피고:"판사님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신청하라고 해서 한 건데..."

판사:"그건 문서송부 촉탁 같은 겁니다."

피고:"그럼 나중에 다시 (양승태 증인)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되는 것이 없으니,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해야 하니 보류해 주십시오."

판사:"그래도 일단 결정을 해야 하니까..."

피고:"보류하지 않고 부결한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판사:"그럼 보류하겠습니다."

피고:"그리고 조관행 판사사건을 보니 공판전 증인신문이라는 것이 있던데..."

판사:"그건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과는 관계없습니다."

판사:"이 사건과 관련 사건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검사:"3 건이 있는데, 한건은 이광범... 재정신청기각되었고,... 또 한건은"

피고:"이 사건과 관련 있는 것은 맞고소와 박종우 판사 고소건인데, 나머지 한건은 공개질의서에 대한 것입니다."

검사:(뭔가 주절주절 사건 설명)"

피고:"지난 30 년간의 재임용 대법원 판례들에 대한 불법행위관련 공개질의를 공재협 이름으로 했더니 대법원장이 허위공문서 작성해서 고소한 것입니다."

검사:"피고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피고:"제가 대표로 가서 했기 때문이죠."

검사:"그 사건에 대한 자료를 얻어야 하는데... 재정신청은 어떻게 되었나요?"

피고:"기각되어 재항고 했더니, 재판부의 주심이 피고인과 동문이라 법관기피 신청했습니다."

판사:"양승태는 경남고인데..."

피고:"피고인 이광범, 이상훈과 주심 김황식이 같은 광주일고 동문입니다."

판사:"...그거 끝날려면 오래 걸리겠네요."

피고:"그 사건들과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왜 사건 끝나는 걸 기다립니까? 법관의 독립이 뭔니까?"

판사:"독립해서 판단하라는 거죠. 그럼 검사측 자료 제출 기한은?"

검사:"좀 걸릴 것 같습니다."

판사:"9월 21일이면 되겠습니까? 오후 2시."

검사:"예"

판사:"9월 21일 까지 '인, 부'표 내도록 하십시오."

피고:"이 재판부는 고전에 나오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의)변학도식 재판부가 아닙니다. 필요없는 증거를 낼 이유는 없고, 저는 피고인으로서 검사측의 공격에 대한 방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판부입니다. 와서는 안될 이 재판을 되도록 이면 빨리 끝내주기 바랍니다."

판사:"..."

결론:

공판조서 등본과 실제 공판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속기가 아닌 공판 녹취 내지는 녹음을 허락하여 주기 바랍니다.

2006년 8월 22일

위 피고인 김명호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hyungsa.htm>

서울 중앙지법 단독 8부 귀중